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울진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4. 11.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8	7	2	9,323	3	287,115	0	0
1	○ ○ ○	@@@@ 임용 부적정	-	1	-	-	-	-	-	-
2	○ ○ ○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	1	-	-	-	-	-	-
3	○ ○ ○	인사운영 부적정	-	1	-	-	-	-	-	-
4	□□□□□□□	관급자재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	1	-	-	-	-	-	-
5	▷ ▷ ▷	지방보조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1	-	-	-	-	-	-
6	▷ ▷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부적정	-	1	-	-	-	-	-	-
7	● ● ● ●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	-	-	-	-	-	-
8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 부적정	1	-	-	-	-	-	-	-
9	⊕ ⊕ ⊕ ⊕ ⊕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1	-	-	-	-	-	-	-
10	□□□□□□□	@@음·@@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1	-	-	-	1	11,185	-	-
11	◇ ◇ ◇ ◇ ◇ ◇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순성토 반입 추진 부적정	1	-	-	-	1	137,187	-	-
12	≡ ≡ ≡	@@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1	1,636	1	138,743	-	-
13	≡ ≡ ≡	지방하천(@@천) 준설공사 사토량 정산 부적정	1	-	1	7,687	-	-	-	-
14	● ● ●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	1	-	-	-	-	-	-
15	▽▽▽▽▽▽▽	@@@@@@@ 운용센터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
내 용

울진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직무대리, 전보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지역보건법 시행령」(2024. 7. 3. 대통령령 제3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 임용 관련 재안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2016. 10. 3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094)등에 따르면 @@@@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에서도 2020. 6. 1. @@@@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후 2021. 8. 25.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계획안을 확정하고 2021. 9. 6. ~ 2021. 12. 31. 기간 4번의 임용시험 계획 공고(재공고 포함)를 하여 최종적으로 2022. 2. 7. 민간인 @@@를 @@@@ (개방형직위)으로 임용하였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서 @@@@을 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내부적으로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만약 울진군 내부에 @@@@으로 임용가능한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전입받는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으로 임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울진군 ○○○에서는 2021. 8. 23.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 계획(@@@@과-14887)을 수립하면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임의로 공고 및 재공고 후에도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로 임용이 곤란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2021. 8. 25.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계획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은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없으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임을 설명하였다.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2021. 9. 6. ~ 2021. 11. 26. 기간 동안 3차례의 울진군 @@@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계획 공고(재공고 포함)를 진행하면서 의사면허 지원자 면접시험 불참, 응시자 없음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자격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당초 의도대로 의사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후 2021. 12. 27. ~ 2021. 12. 31. 기간 동안 재공고(4차)를 진행하여 원서접수기간인 2021. 12. 28.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약사자격증을 보유한 @@@가 울진군 @@@@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표] 울진군 @@@@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및 최종합격자 현황

일 시	내 용	비 고
• 2021. 8. 23. [계획]	•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계획안 수립 -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미 달 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임용계획 수립 (@@@@과-14887)
• 2021. 8. 25. [심의]	•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계획안 심의 -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미 달 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임용계획 심의 확정 (의안 제2021-29호)
• 2021. 9. 6. [1차] ~ 2021. 9. 10.	•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2021. 9. 27. [2차] ~ 2021. 10. 1.	•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재공고 -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의사면허) 응시 후 면접 불참
• 2021. 11. 22. [3차] ~ 2021. 11. 26.	•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재공고 -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2021. 12. 27. [4차] ~ 2021. 12. 31.	• 울진군 @@@@ 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재공고(2차) -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약사면허) 응시원서 접수
• 2022. 2. 7. [임용]	• @@@ @@@@ 장 임용 [지방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그리고, 응시원서접수에 따른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서류전형 자격 기준표(일자미상)를 작성하여 의사면허 없이 약사면허만을 보유한 민간인 @@@는 자격요건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적격하다는 문서를 작성 후 2022. 1. 5. 울진군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로 @@@를 선정하고 2022. 1. 17. 면접시험 실시 후 2022. 2. 7 @@@@ [지방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임의로 변경된 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사가 @@@@으로 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
내 용

울진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 교육훈련 이수자를 미이수로 표시하여 승진임용 제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적용하고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에서는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을 입력하되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교육이수 실적은 승진 직급인 5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임용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연간교육 훈련 시간 충족여부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승진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7. 10. 10. ~ 2017. 11. 17. 기간 동안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고 2017. 11. 20. 복지5급으로 승진임용된 @@@의 5급 승진리더 교육이수실적(100시간)을 5급에서의 교육이수 시간으로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2022. 12. 13. 4급 1명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시 4급으로 승진 가능한 직렬인 행정 및 복지를 포함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가 복지 5급 @@@ 1명만 등재되어있음에도 승진임용 후보자 심의조서에 복지5급 @@@의 경우 ‘상시학습 미충족(44시간)’으로 표현하여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표 1] 복지5급 @@@ 교육훈련 실적 등 현황

대상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2022. 12. 23.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등재현황 (5급 → 4급 서기관)		2022. 12. 23.기준 교육훈련 (5급 승진리더교육 반영)		
직급	성명	이수기간	실적시간	반영시간	복지5급	행정5급	총족시간	필요시간	결과
복지5급	@@@	2017.10.10. ~ 2017.11.17.	199	100시간	@@@	대상자 없음	307	247	충족

그 결과, 복지5급 1명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음에도 교육 훈련 미충족자로 표시되어 4급으로의 승진임용에서 배제되었다.

2. 교육훈련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부적정

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고 상기 사항은 2022. 3. 1.이후 승진심사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2. 3. 1. 이후 승진심사시부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7시간 충족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을 2021년부터 매년 시·군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관련지침(집합교육 의무이수 사항 반영) 시행에 따라 2022. 3. 1. 승진심사시부터는 승진후보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집합교육 실적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 9. 29.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8→7급 @@@ 등 2명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이 없어 상시학습 미충족자임에도 승진심사에서 제외하지 않고 충족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현황

연 번	승진의결일 (승진임용일)	직급승진		교육훈련(상시학습) 실적 현황				상시학습 충족여부
				전체충족여부		집합충족 여부		
		직급승진	성명	교육훈련 필요시간	교육훈련 인정시간	집합교육 필요시간	집합교육 인정시간	
1	22.9.29. (2022.10.11.)	행정 8급→7급	@@@	166	173	11	0	미충족
2	22.9.29. (2022.10.11.)	행정 8급→7급	@@@	206	313	11	0	"

* 울진군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행정 8→7급 2명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않고 승진임용 되었다.

3.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Ⅱ.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 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관리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 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3]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연번	승진의결일	승진후보자		총 필요시간	인정시간	중복시간	실 제 인정시간	총족 여부
		직급	성명					
1	2022.09.29.	시설 8급→7급	@@@	246시간	277시간	45시간	232시간	부
2	2022.12.23.	녹지 9급→8급	@@@	159시간	157시간	4시간	153시간	부

* 올진군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시설 7급 @@@ 등 2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올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
내 용

울진군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직무대리, 전보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인사요인 책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2024. 6. 27) 제47조(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 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3명을 중견간부양성 교육자로 선발하여 교육과건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승진 등의 경우 최초 중견간부양성 교육 파견에 대한 3명의 후속승진을 책정 후, 차년도에도 중견 간부양성 교육에 3명이 배정된다는 사유로 장기교육과건 복귀시점 전후로 최초 책정하였던 후속승진요인에 대한 별도의 감요인을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중견간부양성교육에 대한 후속인사를 상계 처리하여 인사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근속승진한 자가 승진하거나 중견간부양성 교육 대상자로 교육파견 될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감원하고 종전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증원하도록 인사요인을 반영·책정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최초 중견간부양성 교육 파견인원에 후속 인사요인 책정 후 차년도에도 동일 인원이 교육파견 인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별도의 감요인 책정하지 않고 중견간부양성 교육파견에 따른 인사를 운영하더라도 해당연도 중견간부양성 교육파견 대상인원에 근속승진자가 포함되어있다면 당초에 책정하였던 인사요인 중에서 근속승진자에 대한 요인은 감으로 책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3년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 3명중에 보건6급 @@@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된 자로서 현직급 정원이 아닌 별도정원으로 관리받고 있었음에도 2023년 교육파견 대상자 보건6급 @@@를 포함한 3명 명단 제출시점(2022. 12. 26.) 이후 6급 승진을 인사위원회에서 6급 승진요인을 감원하지 않고 인사요인으로 책정하였다.

[표 1]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6급 승진 부적정

구 분 (의결일)	2023년 6급 중견간부양성 대상자	6급 인사요인	비고 1	비고 2
2023년 하반기 (2023.6.22.)	① 보건6급 @@@(근속승진)	6명	근속승진자 (보건6급 @@@)에 대한 감원요인 미책정	6급 1명 추가 승진
2024년 상반기 (2023.12.21.)	② 복지6급 @@@ ③ 행정6급 @@@	4명		

그 결과,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이 엄격히 구분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23년도에 6급 1명이 추가로 승진임용 되었다.

2.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2024. 6. 27.) 제163조 내지 164조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4. 2. 1. 0000국장에 직무대리 지정된 행정5급 @@@이 2024. 4. 1.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결정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구약식) 통보를 받고 2024. 4. 5. 해당사건으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 된 후 2024. 5. 21.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승진임용 제한 사유(징계요구)가 발생한 2024. 4. 5. 행정5급 @@@의 0000국장 직무대리를 즉시 해지하지 아니한 채로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였다.

[표 2] 행정5급 @@@ 직무대리 지정 이후 일자별 상황

일 자	내 용	비 고
2024. 2. 1.	* 행정5급 @@@, 0000국장(4급) 직무대리 지정	* 직무대리업무만 수행
2024. 4. 1.	* 행정5급 @@@, 피의사건결정결과 통보(대구지방 경찰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4. 4. 5.	* 울진군→경상북도인사위원회 (행정5급 @@@, 징계요구)	* 구약식에 따른 징계요구
2024. 5. 21.	* 경상북도인사위원회→울진군 (행정5급 @@@, 불문경고)	

그 결과,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가 0000국장으로 직무대리 근무하게 되었다

3. 특별사면(징계대상자) 선정 부적정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2(2024. 2. 7.)의 특별사면(징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 처리지침의 ‘사면범위’에 따르면 파면·해임·징계면직·강등·정직·감봉처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갑질비위,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상가지침을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울진군에서도 상가지침을 확인한 후 징계사면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특별사면(징계사면)시행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등을 받은 사유로 선정된 사면대상자 71명 중에 2010. 11. 8.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농업주사 @@@ 등 2명을 포함시켜 징계사면대상자를 작성하여 경상북도로 제출하였고 2024. 2. 7. 최종적으로 징계사면대상자로 확정 받도록 하였다.

[표 3] 울진군 징계사면 대상자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징계처분 내용			비 고
				처분일	비 위	징계양정	
1	울진군청	@@@	00.00.00	2010. 11. 08	음주운전 등	견책	징계사면
2	"	@@@	00.00.00	2011. 03. 21	정치운동 등	견책	"

그 결과 특정비위(음주운전 및 정치운동)로 인해 징계사면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 □□□□□□□에서는 2022년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운동장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과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찰공고일	계약상대자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운동장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	2022. 6. 8.	142,500	2022. 5.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1) 예규 제198호(시행 2022. 1.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 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물품 구매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운동장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의 응찰²⁾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아래

2) 적격심사 대상으로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00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의 1순위 업체는 ‘\$\$\$\$\$\$\$’임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자료를 제출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심사하였다.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계 약 명	업체명	입찰공고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운동장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	\$\$\$\$\$\$	2022. 5. 24.	2022. 6. 3.	2023. 6. 2.	B0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에게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아래 [표 3]과 같이 정당하게 적격심사 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을 지나 유효하지 않으므로 경영상태 배점 0점이 부여되며, 신인도는 물품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 경영상태)이 10점이므로 최대 가점 2점(소상공인 1, 여성기업 1)이 부여되어 종합평점은 당초 85.6점이 아닌 67.6점이 된다.

[표 3]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85.6	67.6	적격 통과 점수 (85점)
제61회 경북도민체전대비 00000운동장 잔디교체공사 관급자재(천연잔디) 구입	\$\$\$\$\$\$	142,500	2022.6.8.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경영상태	30	19	
				입찰가격		60	55.6	
				신인도		+2~-2	1	
							55.6 ⁵⁾	

3)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4)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5)

$$55.6 = 7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142,500,384)}{\text{예정가격}(168,839,900)} \right) \times 100$$

6) 소상공인 신인도 : 1점, 여성기업 신인도 : 1점(기존 평가시,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29점이므로 1점만 부과했음)
신인도는 물품납품이행능력 점수가 30점 미달 시 최대 2점에서 -2점까지 가감할 수 있음

그 결과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후순위업체(\$\$\$\$\$\$)는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 >>>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보조사업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20 ~ 2022년까지 ‘▲▲▲▲▲▲▲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공모시 ▲▲▲▲▲▲▲ 지원사업 보조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기초사업비)				비고
		합계	도비	군비	자부담	
▲▲▲▲▲▲▲ 지원사업	\$\$\$\$\$	4,000,000	1,400,000	1,400,000	1,200,000	

1.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결정 시 확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심사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교부결정 당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산하여 보조금분의 집행잔액을 반납 받거나, 보조사업 배분율의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교부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교부결정된 사업비 총액의 자부담 배분 비율과는 달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 주고 이를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 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산 하였으며 그 결과로 보조결정 시 사업비 총액에 따른 집행잔액 1,127,889,605원의 43.56%인 보조금분 491,308,71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현황

(단위 : %, 원)

구분		보조현황			집행잔액	보조금분 집행잔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공모시 (기초사업비)	금액	4,000,000,000	2,800,000,000	1,200,000,000		
	비율	100	70	30		
교부결정시	금액	6,427,375,000	2,800,000,000	3,627,375,000		
	비율	100	43.56	56.44		
사업계획변경 1차	금액	4,803,607,000	2,800,000,000	2,003,608,000		
	비율	100	58.29	41.71		
사업계획변경 2차	금액	4,761,942,000	2,800,000,000	1,961,942,000		
	비율	100	58.8	42.2		
사업계획변경 3차	금액	4,815,347,000	2,800,000,000	2,015,347,000		
	비율	100	58.15	41.85		
정산시	금액	5,299,485,395	2,800,000,000	2,499,485,395	1,127,889,605	491,308,710
	비율	100	52.84	47.16		보조금분 43.56% 적용시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을 통한 취득 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에서 ▲▲▲▲▲▲▲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취득한 ▲▲▲▲▲▲▲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변동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변동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등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하여 2022. 7월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a 커피” 외 3개 업체와 위·수탁 계약⁷⁾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⁸⁾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 로컬푸드직매장 대여현황

연번	업체명	위치	면적(㎡)	계약일	계약만료일	임대료	비고
1	a 커피	▲▲▲▲▲▲▲ 3층	142.65	2022.7.19.	2027.7.31.	3,000~5,000천원/월	
2	\$\$\$	▲▲▲▲▲▲▲ 3층	282.32	2022.7.19.	2024.7.31.	3,000~4,500천원/월	
3	\$\$ \$\$\$	▲▲▲▲▲▲▲ 2층	106.62	2024.3.12.	2026.1.28.	최저 500천원/월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1.과 2.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 및 정산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보조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실제 계약서 제목은 위·수탁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내용은 임대차 계약과 같음
8) 계약서 상에는 수수료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 임대료와 같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 ▷▷▷에서는 각종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기준에 맞는 귀농인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다.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귀촌정착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에 따르면 타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⁹⁾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면서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행지침에 맞는 지원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자격에 맞는 신청자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9)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 2023년 사업추진 시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자격 기준 부부 이상’의 가족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비를 교부하여 다른 귀농인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표] 지원자격 불부합 신청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연도	성명	주소	전입일	자격여부 (부부이상)	보조금	비고
합계		3명				12,000	
1	2021	@@@	@@면 @@@길78-11	2019.2.25.	부	4,000	
2	2022	@@@	@@면 @@@@길 115-6	2020.12.2.	부	4,000	
3	2023	@@@	@@면 @@@길35-25	2021.8.2.	부	4,000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〇
내 용

울진군 〇〇〇〇〇〇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판매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과징금 부과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씹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항목에 대한 1차 위반 시 해당식품의 폐기와 함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 23]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서 식품접객업 항목의 제1호 가목(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으로 하고, 행정처분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〇〇〇〇〇〇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인 경우 행정처분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0. 9. 4. 상한 ##를 판매하여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인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에 대하여 감경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천 원으로 처분하였다.

[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련 과징금 부과 부적정 현황

(단위 : 개소)

업 소 명 (위 반 자)	소재지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 (@@)	@@읍 @@리 523-4	'20. 09. 04.	썩거나 상하여 위해우려 있는 식품 판매	'20. 09. 08.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부과 (750천원)	과징금 제외대상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거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감경된 일수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할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유통주점업자가 종업원 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에 따라 1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경찰 통보에 의하여 유통주점업자가 식품 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이 울진 경찰서로부터 2021. 7. 14. 식품위생법 위반(접객원 명부 미작성)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접객원 명부 미작성 행위를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상의 출입자명부도 미작성¹⁰⁾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태료 10만원을 150만 원¹¹⁾으로 과다부과하는 등 부적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표 2]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련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업 소 명 (위 반 자)	소재지	적발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 (@@@)	@@면 @@리 429-3	'21. 07. 14.	접객원 명부 미작성	'21. 08. 04.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150만원	경찰 통보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 \$\$\$\$(@@@)에서 행정처분 기준과 달리 과태료를 과다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행정처분 사항 공표 미이행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25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 및 내용을 울진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10) 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출입자 명부 미작성)은 과태료 150만원 부과 대상임.

11) 사전통지에 따른 납부로 인하여 실제 납부액은 120만원임.

[표 3]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홈페이지 등 미공표 현황

연번	연도	업종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20	\$\$\$\$\$	@@읍 @@리 203-2	@@@	과징금부과	
2	2020	\$\$\$\$	@@면 @@리 333	@@@	과징금부과	
3	2020	\$\$\$\$\$	@@면 @@리 287-1	@@@	과징금부과	
4	2020	\$\$\$\$\$ \$\$\$	@@면 @@리 455-2	@@@	과징금부과	
5	2020	\$\$\$\$	@@면 @@리 35-1	@@@	과징금부과	
6	2020	\$\$\$	@@면 @@리 213-1	@@@	과징금부과	
7	2020	\$\$\$ \$	@@면 @@리 36-69	@@@	과징금부과	
8	2020	\$\$\$ \$\$\$	@@읍 @@리 523-4	@@@	과징금부과	
9	2020	\$\$\$\$\$	@@읍 @@리 603-1	@@@	과징금부과	
10	2020	\$ \$ \$\$\$	@면 @@리 139-7	@@@	과징금부과	
11	2020	\$\$\$\$	@@읍 @@리 211-9	@@@	과징금부과	
12	2021	\$\$\$\$	@@@면 @@리 191-1	@@@	영업정지	
13	2021	\$\$\$ \$	@@읍 @@리 223	@@@	과징금부과	
14	2021	\$\$\$	@@면 @@리 319-2	@@@	영업정지	
15	2021	\$\$\$\$\$	@@읍 @@리 83-6	@@@	영업정지	
16	2021	\$\$\$\$	@면 @@리 236-4	@@@	과징금부과	
17	2021	\$ \$ \$\$\$	@@면 @@리 347	@@@	과징금부과	
18	2022	\$\$\$\$\$ \$\$\$\$	@@읍 @@리 55-1	@@@ 외 1	품목류제 조정지	
19	2022	\$\$\$\$\$\$\$	@@@면 @@리 271	@@@	영업정지	
20	2022	\$\$\$\$\$	@면 @@리 1303-4	@@@	과징금부과	
21	2022	\$\$\$\$	@@면 @@리 455-2	@@@	과징금부과	
22	2024	\$\$\$\$\$	@@면 @@리 333	@@@	과징금부과	
23	2024	\$\$\$\$	@@읍 @@리 203-2	@@@	과징금부과	
24	2024	\$\$\$\$\$\$\$	@@면 @@리 333	@@@	과징금부과	
25	2024	\$\$\$\$\$\$\$	@@읍 @@리 603-1	@@@	과징금부과	

※ 올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소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관할 구역 내의 영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및 영업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22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소홀 내역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20	\$\$\$\$\$ \$\$\$\$	@@읍 @@리 209-3	@@@	영업소폐쇄	
2	2020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3	2020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4	2020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5	2020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6	2020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7	2020	\$\$\$ \$	@@면 @@리 581-16	@@@	시정명령	
8	2020	\$\$\$\$	@@면 @@리 304-2	@@@	영업소폐쇄	
9	2020	\$\$	@면 @@리 125-8	@@@	영업소폐쇄	
10	2020	\$\$\$\$\$	@면 @리 726-7	@@@	영업소폐쇄	
11	2020	\$\$\$\$\$\$	@@면 @@리 672	@@@	영업소폐쇄	
12	2020	\$\$\$	@@읍 @@리 54-3	@@@	영업소폐쇄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3	2020	\$\$	@@읍 @@리 70-6	@@@	영업소폐쇄	
14	2021	\$\$\$\$	@@@면 @@리 191-1	@@@	영업정지	
15	2021	\$\$\$	@@읍 @@리 83-6	@@@	영업정지	
16	2021	\$\$\$\$\$	@면 @리 236-4	@@@	영업정지	
17	2022	\$\$	@면 @리 55 1층	@@@	영업소폐쇄	
18	2022	\$\$\$\$\$ \$\$\$\$	@@@면 @리 271	@@@ 외1	품목류제조정지	
19	2022	\$\$\$\$\$	@면 @리 1303-4	@@@	영업정지	
20	2022	\$\$\$\$	@@면 @리 303-25	@@@	시정명령	
21	2023	\$\$\$\$	@@읍 @리 311-6	@@@	영업소폐쇄	
22	2023	\$\$\$\$	@@면 @리 540-2	@@@	영업소폐쇄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방지 및 영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경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내 용

울진군 ㉠㉠㉠㉠㉠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에서는 @@@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며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따른 카라반 4대를 재산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1.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 미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군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1건당¹²⁾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¹³⁾할 때도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2018년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예산 4,050백만 원)」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했고, 30% 이상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12) 재산의 종류별로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건물), 시가표준액(기타 재산)으로 구분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13)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17. 10. 20.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고, 2020. 3. 20.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사업비가 1,286백만 원(31.7%) 감액¹⁴⁾되어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임에도 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0. 9. 18.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중 「@@해변 주변 경관개선사업」(예산 1,286백만 원, 집행 잔액사용)을 증액하여 공유재산 취득 사업비가 46.5% 증가되어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 임에도 계획수립 및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공유 재산이 관리계획 없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유재산 등록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부지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4)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사업비 4,050백만 원 → 감액 2,764백만 원(31.7%) → 신규 「@@해변 주변 경관개선사업」 1,286백만 원(46.5%)

따라서 울진군 ㉠㉠㉠㉠㉠은 2021. 12. 22.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중 @@해변 주변 경관개선사업(예산 1,286백만 원, 집행잔액사용) 집행잔액으로 카라반 4대를 구입한 후 공유재산 등록을 위해 차량 또는 건축물 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했고 울진군 ▲▲▲에서는 2022. 7. 4. ㉠㉠㉠㉠㉠로부터 공유재산을 이관 받은 후 차량 또는 건축물 시설로 등록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2021. 12. 22. 「@@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중 @@해변 주변 경관개선사업(예산 1,286백만 원, 집행잔액사용) 집행잔액으로 카라반 4대를 구입한 후 @@해변에 설치하고도 차량, 건축물 시설로 등록하지 않았고, 울진군 ▲▲▲에서는 2022. 7. 4. ㉠㉠㉠㉠㉠로부터 공유재산을 이관 받은 후 적법한 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카라반 4대를 13회 숙박시설로 임대하였다.

그 결과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카라반이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않아 무허가 숙박 시설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용 또는 공공용지 등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8조에 군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 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는 @@해변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카라반 4대를 구입할 때 장래에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생, 운영 등에 문제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해변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카라반 4대를 구입하며 장래에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생, 운영 등에 문제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2021. 12. 22. 카라반 4대가 납품완료되고 나서 2022. 7. 4. ▲▲▲로 재산 이관하기까지 1회도 숙박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표] 울진군 @@해변 카라반 운영 관련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지출내역	지출금액	관련부서	비고
계		387,693,000		
1	@@해변 경관조성 공사 카라반 구입 및 부속데크 설치 등 3건	254,708,000	㉸㉸㉸㉸㉸	
2	@@@휴양림 카라반 설치 기반공사 2건	76,215,000	㉸㉸㉸㉸㉸ ▲▲▲	
3	@@@자연휴양림 카라반 관련 보수 및 부품 교체 13건	60,552,000	▲▲▲	

또한, 위 [표]와 같이 ㉠㉠㉠㉠㉠와 ▲▲▲는 카라반 구입 및 이전 설치비용 등으로 2021.12. 22.부터 2024. 9. 10. 감사일 현재까지 총 387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카라반의 누수, 결로, 악취 등의 민원 사유로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카라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387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관리소홀 문제로 540천 원 13건의 이용객의 예약이 전부 취소 처리되어 현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리부서는 카라반 운영계획에 따른 적법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 ㉠㉠㉠㉠㉠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의 판매·제공 및 보호자 동반 없이 출입시간¹⁵⁾ 외에 청소년 출입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로 되어 있고, 보호자 동반 없이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때에는 1차 영업정지 7일¹⁶⁾,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보관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개정 2024. 3. 29.>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한 때 - 행정처분 기준의 1차 위반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울진경찰서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사업장 통보를 2023년 9월 21일, 주류보관, 2024년 1월 24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3월 26일 주류판매, 5월 16일 주류보관으로 통보받았음에도 영업정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및 처분내역

업 소 명 (위 반 자)	소 재 지	적발통보일 (적발일)	위반내용	처분내용	
				정당처분	실제처분
\$\$노래연습장 (@@@)	울진군 @@면 @@3길 3	'23. 09. 21. ('23. 09. 22.)	- 주류보관	영업정지 10일	미처분
\$\$노래연습장 (@@@)	울진군 @@면 @@@@로 6	'24. 01. 24. ('24. 02. 06.)	-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영업정지 10일	미처분
\$\$노래연습장 (@@@)	울진군 @@면 @@@@로 6	'24. 03. 26. ('24. 04. 17.)	- 주류판매	영업정지 10일	미처분
\$\$노래연습장 (@@@)	울진군 @@면 @@4길 34-3	'24. 05. 16. ('24. 05. 17.)	- 주류보관	영업정지 10일	미처분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자가 적정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읍·@@@@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지적내용]

울진군 □□□□□□에서는 “@@@@읍·@@@@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 외 3개 회사와 계약 후 용역을 준공하였고, “@@@@읍·@@@@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적용 중인 신기술·특허공법의 개요와 선정 절차¹⁷⁾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사업 개요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자
			계	도금액	관금액			
@@@@읍·@@@@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읍· @@@@리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1,293	1,293		2022. 2. 18. (입찰공고 2022.2.3.)	2022. 2. 21. ~ 2024. 6. 7.	(주)\$\$\$ @@@ 외 3개사
@@@@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 L=8.694km	7,357	5,803	1,554	2024. 6. 21.	2024. 6. 27. ~ 2026. 6. 26.	(주)\$\$\$\$ @@@
@@@@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L=8.594km	7,750	6,514	1,236	2024. 6. 21.	2024. 6. 27. ~ 2026. 6. 26.	(주)\$\$\$\$\$ @@@

17)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모집 공고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 평가 결과 공개 → 공법선정자 통지

[표 2]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단위 : 백만 원)

공법 개요	공법 내용		공고번호	위원회 개최방법	비고
	사업량	금액			
합 계	L=4,457m, A=1,325㎡	2,181	울진군 공고 제2022-52호	서면심의 (23. 2. 16. ~ 2. 17.)	
하수관로 비굴착보수 공법	전체보수 L=4,377m	1,949			
	부분보수 L=80.0m				
	단면보수 A=1,325㎡	232			

1.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제4장 제한입찰 운영규정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은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제안 참여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읍·@@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울진군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8명으로 평가위원을 부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그 결과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제4장 제한입찰 운영규정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 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하고,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은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읍·@@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부적정하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 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제4장 제한입찰 운영규정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절 공법선정 절차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2-1]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량적(객관적) 평가는 아래 [표 3]과 같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2-1]에 따라 평가 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진군 □□□□□□에서는 “@@읍·@@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정량적(객관적) 평가 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4]와 같이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기술보유여부, 기술활용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의 항목을 추가 실시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표 4] 정량(객관적)평가 기준(3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3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30점) 1차평가)	1. 사업 수행 적정성	강도 및 내구성평가	- 설계기준 및 KS기준 등 관련규정 적합평가 - 인증서, 시험성적서에 대한 평가	적/부	사업담당자 평가
	2. 경제성	가격(공사비)	- 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 기준으로 절대 평가-공사비 비율=(제안공법의 공사비÷ 평균공사비)×100	10	
		하자보증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4)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적용	2	
	3. 기술보유여부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 여부	4	
	4. 기술활용실적		- 활용건수 (3.0점) - 활용금액 (3.0점)	6	
	5. 경영상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4	
	6.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경상북도 내 등록업체 또는 경상북도 내 지역사와 협약 유무(2.0점) - 경상북도 내 등록업체 또는 경상북도 내 협약사의 장비보유 현황(2.0점)	4	

4.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6. 경비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으로 경비 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진군 □□□□□□에서는 “@@읍·@@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교통안전표지판 등)를 경비 항목으로 적용하지 않아 사업비 11,185천 원¹⁸⁾(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185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8) @@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6,197천 원, @@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4,988천 원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순성토 반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울진군 ◇ ◇ ◇ ◇ ◇ ◇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그에 따른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1]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일 자	추진 실적	비고
2015. 7.	@@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	
2018. 8. 6.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상북도)	
2020. 6. 10.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울진군)	
2022. 10. 25.	철도부지 매입 완료	
2024. 4. 24.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 울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합계	도급액	관급액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울진	@@	기반시설 조성 A=61,994㎡	3,564	2,745	819	2024. 4. 24. ~ 2025. 1. 18.	\$\$건설(주)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며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m³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 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르면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 등 적극 노력하였어야 했으며, 위 사업 추진을 위해 순성토를 반입할 경우 인근 공사현장의 토사반입 여부 조회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토석 반출입 기간이 겹치는 인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위 사업을 위한 성토재로 반입하여 운반비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순성토 68,235㎥가 필요한 현장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 및 인근 공사 현장 토사 반입 여부 등을 소홀히 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주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위 사업 현장으로 반입 가능함에도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토사 반출이 종료된 현장의 사업비 172,263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아직 미반출된 현장의 사업비 137,187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고 있지 않아 예산 낭비 및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인근 공사 현장 사토 발생 현황

공 사 명	부서	토사 반출 여부	사토 기간	사토 발생량(㎥)	비고
합 계	6개 사업			35,311	
울진 도시계획도로 (@@3-8)개설공사	◇◇◇◇◇	미 반출	미시공	15,582	감액 조치
@@면 도시재생사업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	◇◇◇◇◇	반출 완료	2023. 10. ~ 2024. 12.	2,682	낭비
@@리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반출 완료	2023. 11. ~ 2023. 12.	1,662	낭비
울진 @@천 하상준설공사	㉹㉹㉹	반출 완료	2023. 6. ~ 2023. 7.	10,632	낭비
@@리(골) 세천 긴급정비공사	◐◐◐◐◐	반출 완료	2023. 12. ~ 2024. 5.	1,025	낭비
울진군 @@@@건립공사	◎◎◎	반출 완료	2023. 12. ~ 2024.3.	3,728	낭비

조치할 사항 율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인근 건설공사 현장 토사 반입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 137,187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순성토 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공사 관련 기관에
 토사 반입 여부를 조회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目目目

내 용

울진군 目目目에서는 울진군 관리 소하천인 ‘@@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및 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용역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용역)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천 정비사업	울진군 @@읍 @@리 ~ @@면 @@리 일원	하천정비 0.25km 교량 3개소	3,391	2,213	1,178	2023.04.10. ~ 2024.11.29.	\$\$\$\$(\$주)	90%
@@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울진군 @@읍 @@리 ~ @@면 @@리 일원	실시설계 용역 1식	475	475	-	2021.03.25. ~ 2023.05.18.	(주)\$ \$\$\$\$ (\$주)\$\$\$\$	100%
@@천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울진군 @@읍 @@리 ~ @@면 @@리 일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 1식	1,639	1,639	-	2023.05.01. ~ 2025.02.14.	(주)\$ 엔지니어링 외 2개사	90%

1.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¹⁹⁾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

19)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내용의 충실성 등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용역평가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용역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²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천 정비사업의 착공일인 2023. 5. 1. 후 6개월 이내인 2023. 10. 27.까지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용역평가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475백만 원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미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소하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설계용역평가 결과표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청인 울진군 目目目는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울진군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진군 目目目中에서는 @@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울진군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3.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0-1(손해배상금 등)²¹⁾」에 따르면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산군 目目目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4. 2. 7. 편입부지 내 한전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1,636,27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4-0-1 [2011. 2. 1. 손해배상금 등]) 참조

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미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제1항²²⁾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²³⁾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울진군 ㉔㉔㉔에서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진군 ㉔㉔㉔에서는 @@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하지 않은 채 유효기한²⁴⁾이 지난 등록명부²⁵⁾를 활용하여 2024. 4. 5. 업체를 선정²⁶⁾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였다.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높이10미터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본 공사는 천공기, 항타·항발기 사용)

23)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본 공사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해당)

24) 2023. 1. 27. ~ 2024. 1. 26.

25) 울진군 공고 제2023-124호(울진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전체 19개업체

그 결과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있어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26) @@@@@ (주)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발주청인 울진군 目目目에서는 사토운반거리와 관련하여 당초 운반거리(26.1km)보다 짧은 거리(평균1.4km, 3개소)의 사토장에 2023. 12월부터 2024. 8월까지 반출하였음에도 실정보고를 하여 정산하지 않아 138,743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건에 대한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평가 실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및 과다 계상 사업비 138,743천 원 감액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한국전력공사에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1,636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하천(@@천) 준설공사 사토량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目目目
 내 용

울진군 目目目中에서는 ‘지방하천(@@천) 준설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지방하천(@@천) 준설공사	울진군 @@면 @@리 284-4	하천준설 11,895m³	109	109	-	2022.11.7. ~ 2022.12.4.	(주)\$ \$건설	100%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진군 ㉠㉠㉠에서는 ‘지방하천(㉠㉠천)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준설 토를 아래 [표 2]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였으나 물량이 상이한데도 확인 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7,687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사토운반 현황

(단위 : m³)

구 분	반출량 (설계물량)	실반입량	차 이	비 고
㉠㉠천 준설공사	9,895	-	826	
㉠㉠~㉠㉠간(군도17호선) 도로개설공사(2공구)	-	9,069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정산 사업비 7,687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에서는 2022. 10. 31. @@읍 @@리 390번지 등 2필지 상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증축(연면적 4,496.17㎡)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2. 5. 허가 처리한 사항 등 건축허가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부적정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는 1.5m이상,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8m 이상, 1,000㎡ 이상인 경우 2.4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은 복도 유효너비가 바닥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건축허가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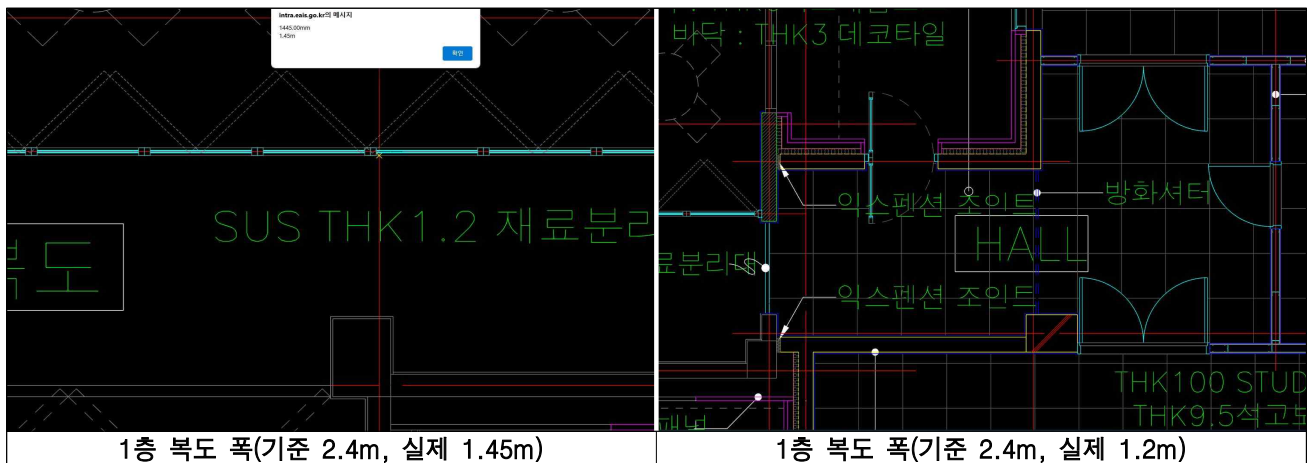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2022. 10. 31. @@읍 @@리 390번지 등 2필지 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증축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1층 바닥면적이 1,085.88㎡로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복도 유효폭을 2.4m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1.45m인데도 관련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시정 및 보완 요구 없이 2022. 12. 5. 건축허가 처리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하기 위한 관련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노유자시설 복도너비 관련 설치기준 부적정 현황

일련 번호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적정 복도너비	설계 피난거리	비고
1	@@읍 읍내리 390번지 등 2필지	22.12.5.	울진군	노유자시설	2,017.92 (B1 114.96) (1층 1,085.88) (2층 817.08)	2.4m이상	1.2~1.45m	0.95~1.2m 미달

[그림] 복도의 유효너비 미달 현황



2.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고,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용도로 쓰는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등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축주 @@@ 등은 @@읍 연지리 397번지 등 3필지 상 신청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축신고 사항을 검토하면서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도 지붕 내화 구조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건축주 @@@이 @@읍 @@리 397-1번지 상 신청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축허가 사항을 검토하면서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는 등 총 7건의 건축 허가 건을 처리하면서 내화구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표 2]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m²)

일련 번호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증축 연면적	지붕내화 구조인증서	비고
1	@@읍 @@리 397 번지 등 3	23.6.15.	@@@ 등 2	제1종근린 생활시설	423	36	무	

[표 3]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m²)

일련 번호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복합자재시험 성적서	비고
1	@@읍 @@리 397-1번지	22.2.7.	@@@	제1종근린생활시설	659.94	무	
2	@@면 @@리 591번지 등 2	22.6.24.	@@@	제2종근린생활시설	213	무	
3	@@면 @@리 882-2번지	22.8.2.	@@@@@@@	제2종근린생활시설	1,813.71	무	
4	@@면 @@리 711번지	22.11.3.	@@@	창고시설	746.455	무	
5	@@읍 @@리 603-44번지 등 4	22.12.19.	@@@	제1종근린생활시설	339.24	무	
6	@@면 @@리 330-4번지	23.2.23.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55.4	무	
7	@@읍 @@리 2번지 등 2	24.4.11.	@@@	제2종근린생활시설	319.6	무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운용센터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울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울진군 ▽▽▽▽▽▽에서는 @@면 @@리 695-1번지 @@@@@@@ 운용센터 구축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운용센터 구축공사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2,1377 m ²	▽▽▽▽▽▽ (22.2~25.2)	23.9.1.	23.6.29 (24.4.8)	285	6,266	(주) @@ (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착공신고 수리전시행

1.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2.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²⁷⁾, 수직보호망²⁸⁾ 또는 방호선반²⁹⁾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썰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27)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28)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9)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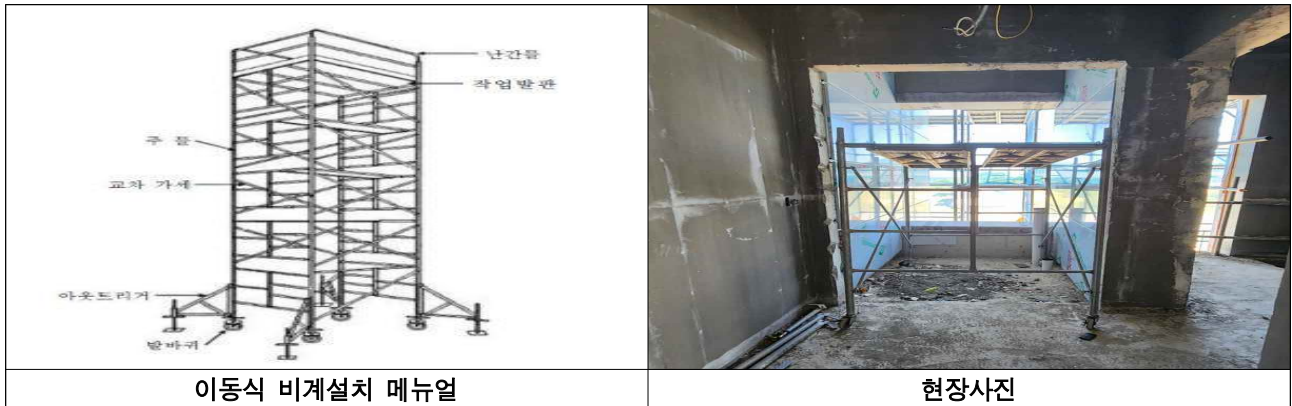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수직보호망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천장 및 마감공사를 위해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바닥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비계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비계 바퀴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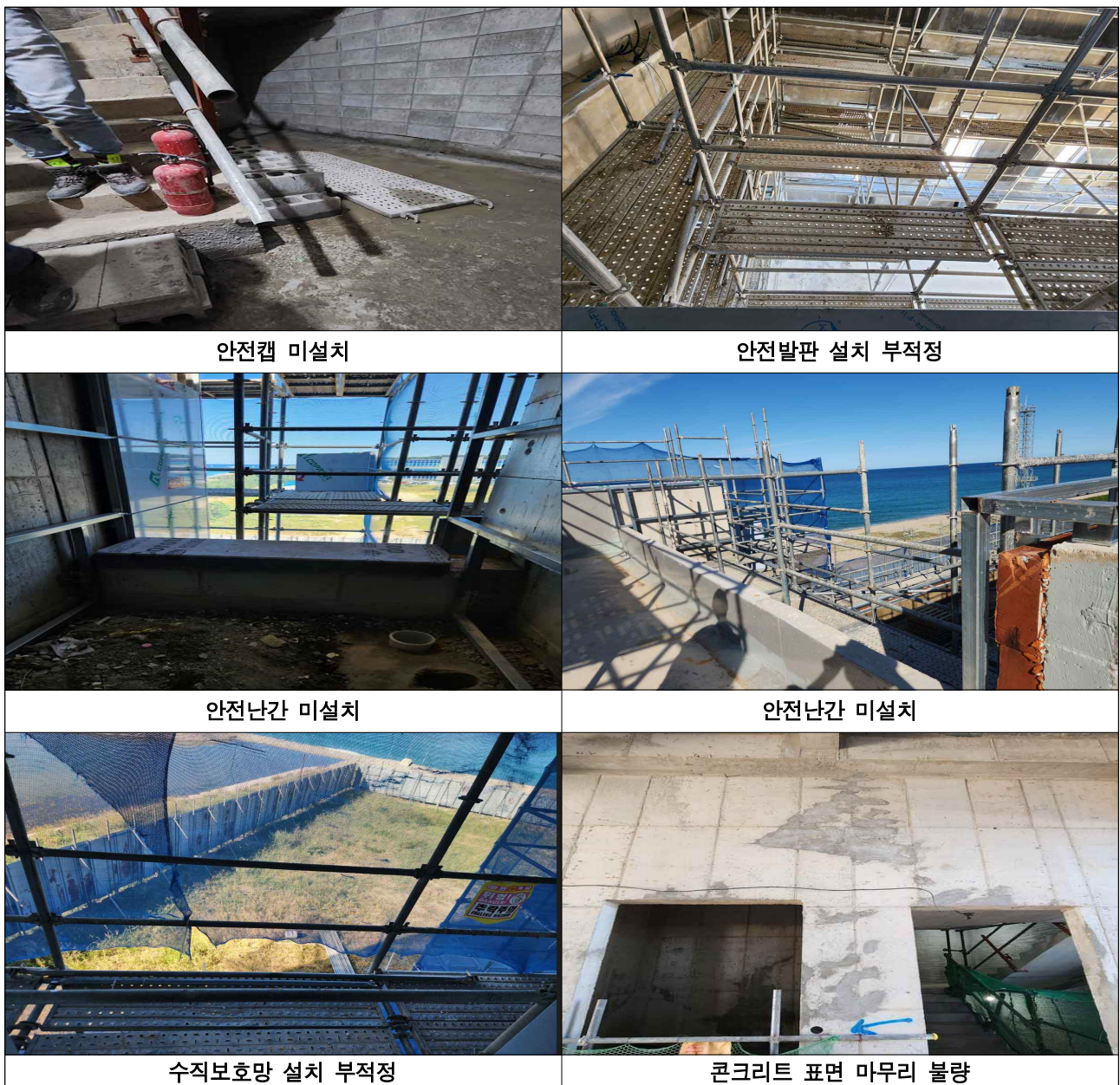
아래 [그림2]와 같이 건축물 외부비계에서 작업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발판 안전조치 미흡, 안전 캡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1] 이동식 비계 설치 부적정 현황



[그림2] @@@@@@ 운용센터 구축공사 부적정 현황



3.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 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면 @@리 695-1 @@@@@@@ 운용센터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주)@@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4. 9. 10.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하였고, 공사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후변화 요인 및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설계용역평가 미 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20백만 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울진군 ▽▽▽▽▽에서는 @@@@@@@ 운용센터 구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일인 2023. 6. 29. 후 6개월 이내인 2023. 12. 29.까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용역평가를 하여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 ▽▽▽▽▽에서는 @@@@@@@ 운용센터 구축공사 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285백만 원으로 220백만 원이 넘어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그 결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공사현장 제반정보 및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제119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단계별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인 울진군에서는 @@@@@@@ 운용센터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획단계,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을 작성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군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된 2020년 1월 이후 시행된 @@@@@@@ 운용센터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달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